

의안번호	제 375 호
의 결 연 월 일	2009년 6월 일 (제 281 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김환동의원 외 6인
발의연월일	2009년 6월 2일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번 호	375
-------------	-----

발의연월일 : 2009년 6월 2일
 발의자 : 김환동, 연만흠, 강태원
 박재국, 이필용, 장주식
 조영재의원(7인)

개정이유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의 모범인 「특허법」 제39조 및 제40조 규정이 삭제되고, 「발명진흥법」 제10조와 제15조로 그 조항이 변경되고, 기타 법령의 변경에 따라 조례의 법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도민이 조례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조례 제명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를 “충청북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로 함.
- 나. 발명진흥법 제정과 특허법·실용신안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의 정리.
 - 1) 「특허법」 제39조 및 40조 → 「발명진흥법」 제10조와 제15조(안 제1조)
 - 2) 「실용신안법」 제25조제2항 → 「실용신안법」 제13조제2항(안 제10조)

다. 불필요한 조항의 내용 정비.

- 1) 불필요한 용어정의 삭제(현행 조례 제2조제2호부터 제2조제4호까지)
- 2) 위원회 기능의 통합(현행 조례 제3조와 제4조) 등

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따른 용어 및 체계 정비

- 1) 항 표시(①, ② --) 다음에 나오는 본문은 띄어쓰기로 함.
- 2) “제○조의 규정에 의한/의하여”를 “제○조의 규정에 따른/따라”로 함.
- 3) 그 밖에 일본식 표현(~에 관하여 등), 어려운 용어(통할→총괄 등)의 정비 등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 발췌 : 별첨

나. 관련부서 협의 : 의견없음(자치행정과)

다. 예산조치 :

라.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와 제15조에 따른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를 보호·장려하고, 연구의욕을 향상시키며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충청북도의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발명"이란 충청북도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2. "도유특허권"이란 이 조례에 따라 도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
3.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도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 나. 도유특허권에 대한 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
 - 다.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4. "처분수입금"이란 도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따라 1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3조(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발명내용을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권리의 승계) ① 도는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을 승계한다.

② 발명자의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 도는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하며, 다른 자치단체 공무원과 공유일 경우에는 발명자간의 협의결과에 따른 지분을 승계한다.

③ 직무발명 외의 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도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

제5조(출원 및 등록)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권리를 양도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제6조(보상금의 지급)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발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

③ 보상금은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지급하며,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7조(등록보상금) ① 도지사는 도유특허권에 대하여 권리당 50만원의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번만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처분보상금) ① 도지사는 도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

의 처분수입금에 상응하는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① 직무발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의 업무는 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무발명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직무발명의 장려에 관한 사항
3. 제2조제3호가목에 관한 사항

제10조(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① 이 조례는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고안에 대해서도 이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제7조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권리당 실용신안권은 30만 원, 디자인권은 20만원으로 한다. 다만, 실용신안권에 대한 등록보상금은 「실용신안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 지급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관계법령 발췌

【발명진흥법】

- 제10조 (직무발명)** ①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통상실시권)을 가진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국유나 공유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공립학교(이하 "국·공립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승계하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한다.[시행일:2007.6.29]
- ③ 직무발명 외의 종업원등의 발명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 실시권(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은 무효로 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국유로 된 특허권등의 처분과 관리는 「국유재산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장이 이를 관리하며, 그 처분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이 다음 각 호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정당한 보상으로 본다.
1.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할 때 사용자등과 종업원등 사이에 행하여진 협의의 상황
 2. 책정된 보상기준의 공표·계시 등 종업원 등에 대한 보상기준의 제시 상황
 3.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할 때 종업원 등으로부터의 의견 청취 상황
- ③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그 보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 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 ④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한다.

【특허법】

- 제100조 (전용실시권)** ①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 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안에서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 ③ 전용실시권자는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속 기타 일반 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전용 실시권을 이전할 수 없다.
- ④ 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다.
- ⑤ 제99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전용실시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102조 (통상실시권)** ①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 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 ②통상실시권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안에서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③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전할 수 있다.
- ④제138조, 실용신안법 제53조 또는 의장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 실시권은 그 통상실시권자의 당해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의장권과 함께 이전되고 당해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의장권이 소멸된 때에는 함께 소멸된다.
- ⑤제3항 및 제4항외의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자(전용실시권에 관한 통상실시권에 있어서는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이를 이전할 수 없다.
- ⑥제3항 및 제4항외의 통상실시권은 특허권자(전용실시권에 관한 통상 실시권에 있어서는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 ⑦제9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통상실시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실용신안법】

제13조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이하 "거절이유"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1. 제4조, 제6조,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25조 또는 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3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조약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4. 제8조제3항 · 제4항 · 제8항 또는 제9조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5.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변경출원인 경우
6.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
7.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분할출원인 경우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제16조 (등록보상금) ①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에 대하여 매 권리당 50만원을 등록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 (처분보상금) ①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18>

1. 삭제 <2004.12.18>
2. 삭제 <2004.12.18>
3. 삭제 <2004.12.18>

②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18>

제22조 (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개정 2005.6.30>) ① 이 영은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고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6.30>

② 제1항의 경우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보상금은 매 권리당 실용신안권은 30만원, 디자인권은 20만원으로 한다. 다만, 실용신안권에 대한 등록보상금은 실용신안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5.6.30>